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」(이하 “병원체자원법”)개정 ('21.12.21.공포, '22.3.22.시행)됨에 따라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 관련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수수료)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(實費)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(수수료)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(實費)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.</u>